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

2.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4. 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 정원 : 68명
- 이용자모집방법 : 장기요양홈페이지, 센터 블로그 관리, 홍보용팜플렛, 소식지발행 등

5. 이용계약

-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6. 계약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센터의 의무

-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됨
- 계약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 안내
-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 공단에 통보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8. 신원인수(보호자)의 의무

- 건강상태 등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9.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별표1)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급여 수가 정보(2024년도)

우리들데이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

공단 급여 수가 (주간보호)

단위 : 원 / 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미만	31,850 원	29,480 원	27,220 원	25,980 원	24,740 원	24,740 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 원	36,850 원	34,020 원	32,470 원	30,920 원	30,920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 원	49,420 원	45,620 원	44,070 원	42,500 원	42,500 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 원	61,480 원	56,760 원	55,210 원	53,640 원	53,640 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3,110 원	67,720 원	62,570 원	61,000 원	59,450 원	53,640 원
13시간 초과	78,400 원	72,630 원	67,100 원	65,540 원	63,990 원	53,640 원

본인 부담률

수급자격	일반	기초	감경(9 %)	감경(6 %)	의료(6 %)
본인부담률	15 %	0 %	9 %	6 %	6 %

급여 한도

단위 : 원 / 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한도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 원

비급여 수가 (2021.08.01 ~ 현재까지)

청구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점심 : 2,500 원 저녁 : 2,500 원	(1식) 기준 / 식사 및 간식 설정으로 청구

공단 급여 수가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60분	24,120	3,618
90분	32,510	4,877
120분	41,380	6,207
150분	48,250	7,238
180분	54,320	8,148
210분	60,530	9,080
240분	66,770	10,0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내용

우리들데이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 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 마. 치매관리서비스
- 바. 여가지원서비스
-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 자. 정도인지장애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 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 ②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이용료의 납입 절차**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용에 따른 총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용, 비 급여 항목 이용료) 이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통지하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게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